

<부표 4> 전원지역에 대한 산업재배치 촉진 보조금제도

구 분	입지지역	보조단가(한도액)	특례 공업단지 보조단가 (한도액)
이 전	전원지역내의 공업단지	10,000엔/㎡(2억엔)	12,500엔/㎡(2억5천만엔)
신증설	전원지역내의 공업단지 등	7,500엔/㎡(1억5천만엔)	10,000엔/㎡(2억엔)
	지역진흥정비공단의 단지	10,000엔/㎡(2억엔)	12,500엔/㎡(2억5천만엔)

주 1) 전원지역이란 전원지역 중 공업재배치촉진법상 「유도지역」 내에 있는 지역임.

2) 특례공업지역이란 원칙적으로 1978년말까지 이미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것임.

에 상당하는 금액(<부표 3> 참조)
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
있음.

- 녹지, 연못 등 공지확보에 기여하
는 환경보전시설의 설치(토지면
적의 20% 이상)
-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
다음의 시설
 - 환경보전시설(배수로, 폐기물처
리시설 등)
 - 복지시설(운동장, 체육관, 풀, 집
회장, 탁아소, 공원, 의료시설 등)
 - 방재보안시설(소방시설, 가로등,
제설차 등)
- 종업원용 시설(통근용버스, 주차
장, 식당 등)의 설치(신규종업원
30명 이상의 고용증가시에 한함)
- 시험연구시설, 수전시설 등

(나) 전원지역 산업재배치 촉진보조금
(통산성)

○ 유도지역 내의 전원지역에 산업재
배치촉진 환경정비보조금과 마찬
가지로 공장 또는 사업소 등을 이
전 또는 신증설할 경우, 다음의 사
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
일부에 상당하는 금액(<부표 4>
참조)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
제도임.

- 공원시설, 환경보전시설, 복지시
설, 방재보안시설
- 종업원용 시설, 물류시설, 정보수
집 · 처리시설, 통신시설, 판매촉
진 · 전시시설, 연수시설

3) 기 타

(가) 용자(지역진흥정비공단)
이전촉진지역 등에서 유도지역 등으
로 이전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
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해 줌.

① 공장적지 담보자금의 대부

- 대부한도액 : 공장적지평가액의